KOSCA
대한전문건설협회
대전광역시회

수 신 신규등록 및 영업정지 업체

참 조

제 목 **건설교육센터 12월 「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」 안내**

1.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의3(건설업의 교육)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이후 **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한 자**는 **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**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, **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**가 부과됩니다.

3. 이와 관련, 건설교육센터 12월 「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대상자는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교육대상: 건설업 최초 등록 및 영업정지처분 업체 대표자(등기임원)

나. 교육운영

○ 집합교육(150,000원)

- 2026년 대전 집합교육 계획 없음*

*집합교육 신청 인원 저조로 인해 온라인 이수 권장

○ 온라인(이러닝)교육(135,000원)

교육차수	접수마감	교육기간		교육시간
		부터	까지	
제43기	11. 30.	12. 3.	12. 9.	8시간
제44기	12. 7.	12. 10.	12. 16.	

○ 기타안내

구 분	온라인(이러닝) 학습방법 및 교육수료 안내
교육신청	교육차수별 접수마감일까지
학습방법	홈페이지(https://edu.kosca.or.kr) 접속-로그인-사이버연수원 - 나의강의실 학습 ※ 교육차수별 정해진 교육기간 내 수강
교육수료	1. 수료조건: 학습기간 종료일 기준 **진도율 100%**인 경우 ※ 교육기간 내 학습진도율 100% 미충족시 **미수료처리**되며 **교육비 환불 불가** 2. 이수통보: **학습기간 종료일을 기준**으로 등록관청에 교육 이수 통보 ※ 온라인교육은 학습기간(7일) 기준으로 이수 통보 ※ 교육기간 종료 후 익일부터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 가능
영업정지 처분업체	교육이수 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4조(영업정지 등의 세부처분기준)에 따라 영업정지기간 **최대 15일 감경**(둘 중 하나) ① 대표이사 이수 시 15일 ② 등기임원 1인당 5일(최대 3인까지)

※ 붙임문서는 **대전시회 홈페이지**(https://daejeon.kosca.or.kr)-**[공지사항]**에서 다운 가능

붙 임 2026년 건설업교육 안내문 1부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회 장 윤 태 연

담당자 주임 박경재 협조자 과장 이재관 실장 윤선중 사무처장 경승현
시 행 전건협 대전 제586호(2026. 11. 25.)
우35233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220번길 54, 3층(둔산동, 전문건설회관)/https://daejeon.kosca.or.kr/
전 화 042-472-5191 전 송 042-472-5197 전자우편 paxxrk@kosca.or.kr